

LH 양산신도시 1·2·5단지 국민임대주택 현장위치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 2길 일대
- 교통편

[도시철도+버스]  
-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에서 21번 버스 탑승 후 물금초등학교 하차

[버스]  
- 일반 : 21, 23-002(심야), 32, 38, 52, 72, 128, 128-1, 132, 137, 138  
- 직행 : 1500

[승용차]  
- 물금IC 방면 : 물금톨게이트 → 중앙고속도로지선을 따라 약 200m 이동 후 좌회전 → 제방로를 따라 약 1.5km 이동 → 증산, 부산대양산캠퍼스, 원동, 양산부산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 약 240m 이동 후 좌측방향 진입 → 금오로를 따라 약 350m 이동 후 좌회전 → 물금로를 따라 약 230m 이동 → 현장 도착

- 위치 :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대중교통 이용 시

[부산도시철도]  
- 2호선 양산역 하차 후 강변로를 따라 양산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km

[버스]  
- 일반 : 21, 24, 32, 38, 52, 57, 63, 67, 78, 78-1, 87, 87-1, 113, 128, 128-1, 138  
- 직행 : 1200, 1300, 3000

[승용차]  
- 물금IC 방면 : 물금톨게이트 → 중앙고속도로지선을 따라 약 200m 이동 후 좌회전 → 제방로를 따라 약 1.5km 이동 → 시청, 버스터미널, 남양산역 방면으로 우회전 → 메기로를 따라 약 2km 이동 → 연양, 어곡지방산업단지 방면으로 우회전 → 메기로를 따라 약 550m 이동 후 부산, 통도사,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 삼일로를 따라 약 590m 이동 후 유턴 → 삼일로를 따라 약 335m 이동 → 영대교앞에서 연양 방면으로 우회전 → 강변로를 따라 약 370m 이동 →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도착

- 양산IC 방면 : 양산IC에서 양산, 산막공업지구 방면으로 좌회전 → 양산대로를 따라 약 3km 이동 → 12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강변로를 따라 약 500m 이동 →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도착

임대문의

※ 본 임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실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LH 콜센터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양산신도시 1·2·5 단지 국민임대주택 ]

웃을 일 많다!

양산신도시 주거단지의 혁신적 변화,  
그 안에서 누리는 대단지 알짜배기 라이프!  
하하호호 웃음 한가득, 기쁨 주는 대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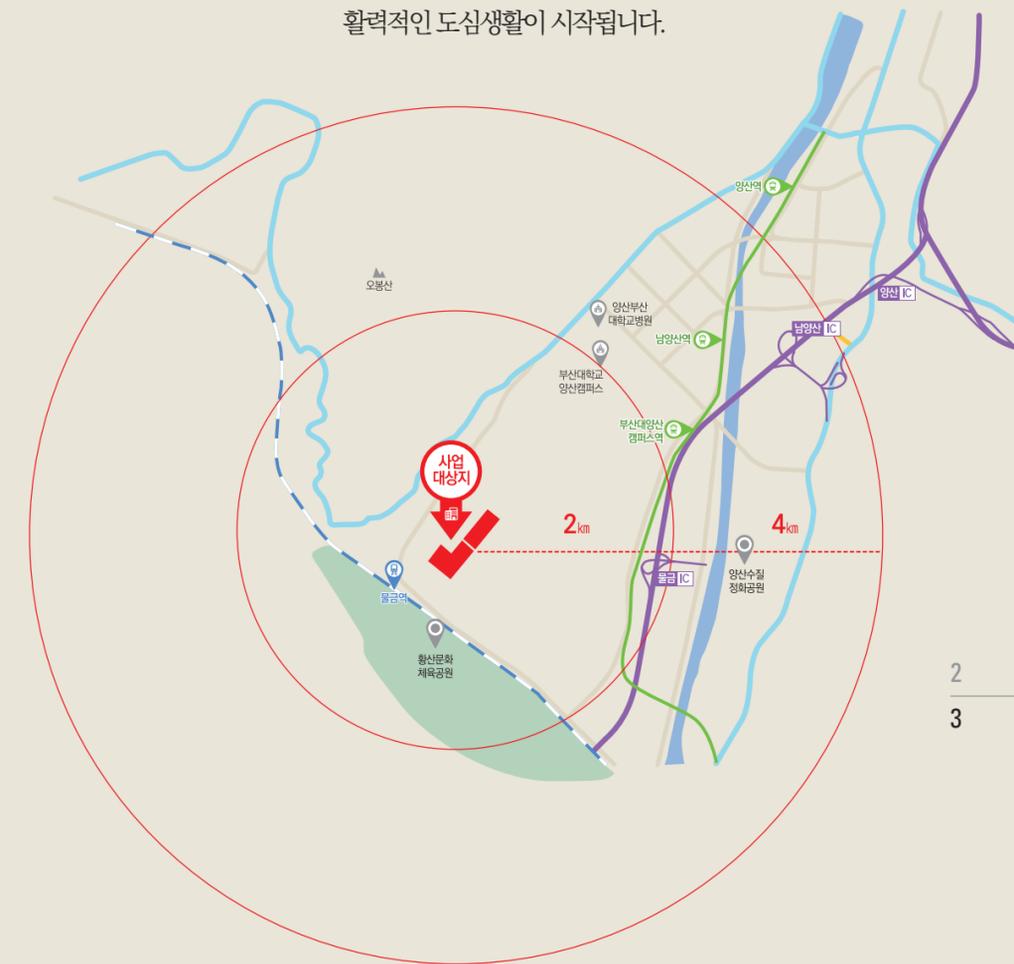
※ 본 홍보물상의 사진, 그래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편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 낼 필요 없습니다. **多** 누릴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도심생활!

양산신도시의 경이롭고 혁신적인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활력적인 도심생활이 시작됩니다.



※ 본 홍보물상의 사진, 그래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편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채로운 교통인프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부선 물금역, 물금IC, 남양산IC 등 다채로운 교통인프라와 인접해 양산뿐 아니라 부산, 울산, 김해 등의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 최첨단 의료서비스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산과 강이 어우러진 맑은 환경

오봉산과 증산 그리고 낙동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환경, 단지 인근 곳곳에 배치된 다수의 근린공원 등으로 사시사철 맑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상의 사진, 그래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편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단지



총 1,105세대

# 1단지

- 33㎡ - 408세대
- 39㎡ - 366세대
- 46㎡A - 96세대
- 46㎡B - 44세대
- 51㎡A - 146세대
- 51㎡B - 45세대

총 452세대

# 2단지

- 33㎡ - 174세대
- 39㎡ - 88세대
- 46㎡A - 138세대
- 46㎡B - 22세대
- 46㎡C - 30세대

총 472세대

# 5단지

- 36㎡ - 272세대
- 46㎡ - 200세대

※ 5단지는 10년임대 575세대(전용 74㎡, 84㎡) 국민임대 472세대로 구성된 혼합 단지임(총 1,047세대)



생활의 가치를  
Up시키는 대단지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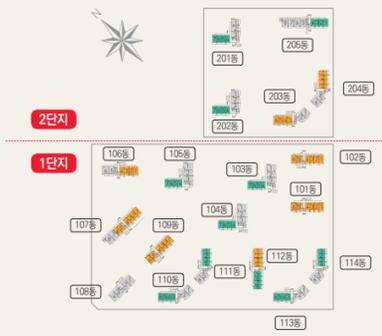


# 2단지

# 1단지

※ 본 홍보물상의 사진, 그래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편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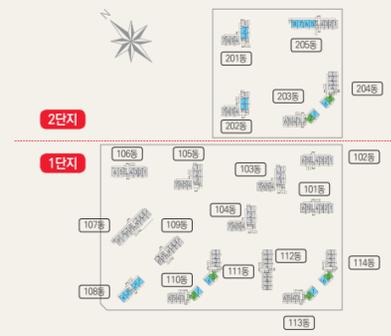


## KEY PLAN

- 33 582세대
- 39 454세대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출입구 방향에 따라 평면도는 상이합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 1·2단지



##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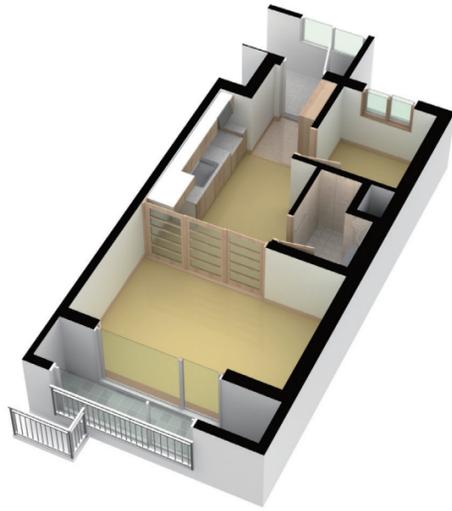
- 46A 234세대
- 46B 66세대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출입구 방향에 따라 평면도는 상이합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 33

계 약 면 적	
공급면적(주거전용)	1단지 33.83㎡ / 2단지 33.83㎡
주거공용면적	1단지 16.2860㎡ / 2단지 16.3376㎡
기타공용면적	1단지 2.0029㎡ / 2단지 2.4359㎡
지하주차장	1단지 17.4222㎡ / 2단지 16.9312㎡
계	1단지 69.5411㎡ / 2단지 69.5347㎡
전 용 면 적	
거실 / 침실	13.95㎡
침실 ( 1 )	5.17㎡
주방 / 식당	9.66㎡
욕실	3.19㎡
현관	1.86㎡
계	33.83㎡
서 비 스 면 적	
발코니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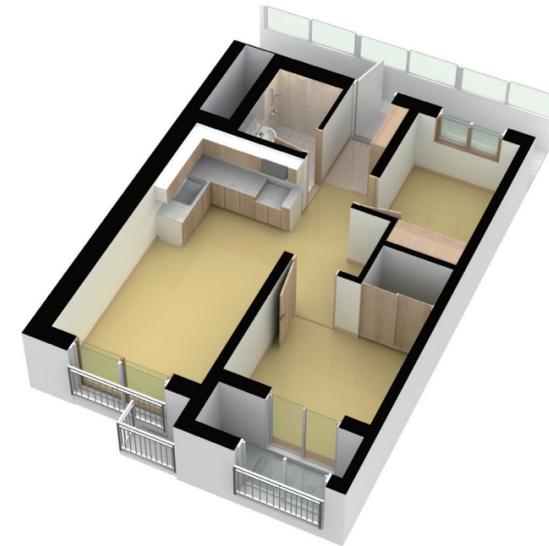
※ 본 면적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면적입니다.



## 46A

계 약 면 적	
공급면적(주거전용)	1단지 46.63㎡ / 2단지 46.63㎡
주거공용면적	1단지 22.4480㎡ / 2단지 22.5191㎡
기타공용면적	1단지 2.7608㎡ / 2단지 3.3576㎡
지하주차장	1단지 24.0142㎡ / 2단지 23.3374㎡
계	1단지 95.853㎡ / 2단지 95.8441㎡
전 용 면 적	
거실	9.14㎡
침실 ( 1 )	8.59㎡
침실 ( 2 )	8.36㎡
주방 / 식당	13.53㎡
욕실	3.43㎡
드레스룸	1.71㎡
현관	1.87㎡
계	46.63㎡
서 비 스 면 적	
발코니	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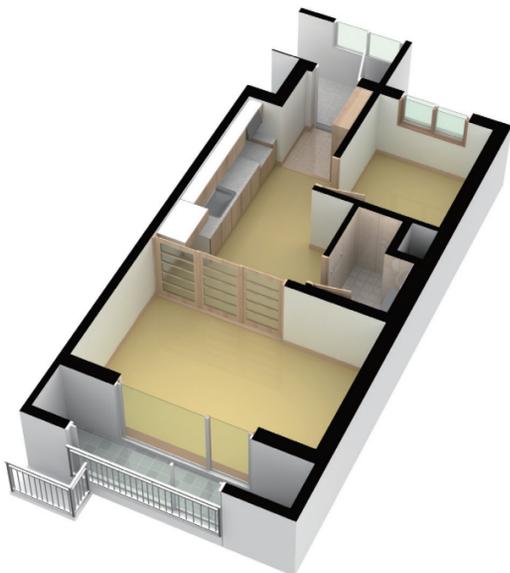
※ 본 면적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면적입니다.



## 39

계 약 면 적	
공급면적(주거전용)	1단지 39.56㎡ / 2단지 39.56㎡
주거공용면적	1단지 19.0444㎡ / 2단지 19.1048㎡
기타공용면적	1단지 2.3422㎡ / 2단지 2.8485㎡
지하주차장	1단지 20.3732㎡ / 2단지 19.7990㎡
계	1단지 81.3198㎡ / 2단지 81.3123㎡
전 용 면 적	
거실 / 침실	15.36㎡
침실 ( 1 )	7.38㎡
주방 / 식당	11.77㎡
욕실	3.19㎡
현관	1.86㎡
계	39.56㎡
서 비 스 면 적	
발코니	7.43㎡

※ 본 면적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면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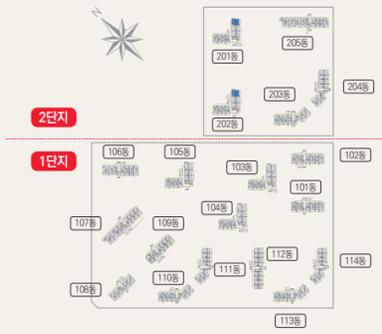
## 46B

계 약 면 적	
공급면적(주거전용)	1단지 46.95㎡ / 2단지 46.95㎡
주거공용면적	1단지 22.6020㎡ / 2단지 22.6736㎡
기타공용면적	1단지 2.7798㎡ / 2단지 3.3807㎡
지하주차장	1단지 24.1790㎡ / 2단지 23.4975㎡
계	1단지 96.5108㎡ / 2단지 96.5018㎡
전 용 면 적	
거실	9.57㎡
침실 ( 1 )	9.57㎡
침실 ( 2 )	8.93㎡
주방 / 식당	13.81㎡
욕실	3.63㎡
현관	1.44㎡
계	46.95㎡
서 비 스 면 적	
발코니 1	10.14㎡
발코니 2	4.25㎡

※ 본 면적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면적입니다.



# 2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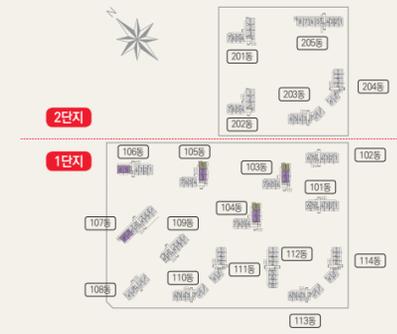


## KEY PLAN

### 46C 30세대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출입구 방향에 따라 평면도는 상이합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2 \times 0.3025 = \text{평}$ )

# 1단지



##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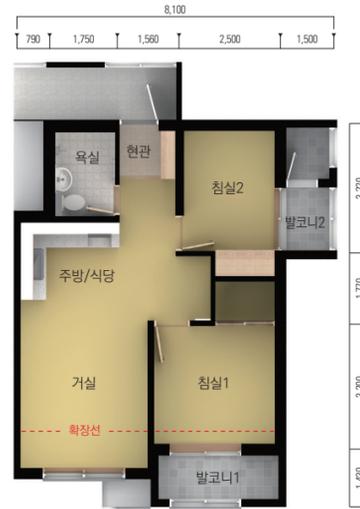
- 51A 146세대
- 51B 45세대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출입구 방향에 따라 평면도는 상이합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2 \times 0.3025 = \text{평}$ )

## 46C

계 약 면 적	
공급면적(주거전용)	46.63㎡
주거공용면적	22.5191㎡
기타공용면적	3.3576㎡
지하주차장	23.3374㎡
계	95.8441㎡
전 용 면 적	
거실	9.14㎡
침실 ( 1 )	8.59㎡
침실 ( 2 )	8.36㎡
주방 / 식당	13.53㎡
욕실	3.43㎡
드레스룸	1.71㎡
현관	1.87㎡
계	46.63㎡
서 비 스 면 적	
발코니 1	9.80㎡
발코니 2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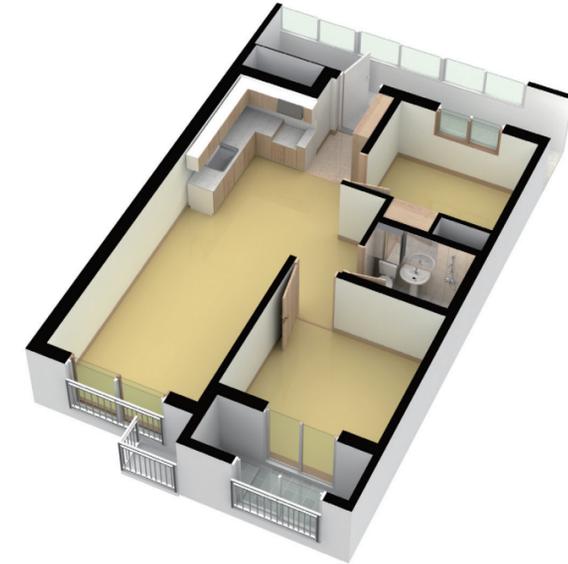
※ 본 면적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면적입니다.



## 51A

계 약 면 적	
공급면적(주거전용)	51.96㎡
주거공용면적	25.0139㎡
기타공용면적	3.0764㎡
지하주차장	26.7591㎡
계	106.8094㎡
전 용 면 적	
거실	10.23㎡
침실 ( 1 )	10.23㎡
침실 ( 2 )	9.44㎡
주방 / 식당	16.35㎡
욕실	3.62㎡
현관	2.09㎡
계	51.96㎡
서 비 스 면 적	
발코니	10.14㎡

※ 본 면적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면적입니다.



## 51B

계 약 면 적	
공급면적(주거전용)	51.96㎡
주거공용면적	25.0139㎡
기타공용면적	3.0764㎡
지하주차장	26.7591㎡
계	106.8094㎡
전 용 면 적	
거실	10.23㎡
침실 ( 1 )	10.23㎡
침실 ( 2 )	9.44㎡
주방 / 식당	16.35㎡
욕실	3.62㎡
현관	2.09㎡
계	51.96㎡
서 비 스 면 적	
발코니 1	10.14㎡
발코니 2	5.32㎡

※ 본 면적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면적입니다.







# 양산신도시 LH 1·2·5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본사 진주 이전으로 홈페이지(www.lh.or.kr) 및 콜센터(1600-1004)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 홈페이지 4.30(목)-5.6(수) 09:00-18:00 / 콜센터 5.4(월) 09:00-18:00

양산신도시 LH 1·2·5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의 소득·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한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현장방문 접수는 정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대 혼잡이 예상되오니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인터넷청약신청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선상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정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6.2(화)-6.3(수) 10:00-17:00)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1단계  
지구초회

▶

2단계  
주택형 초회

▶

3단계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

4단계  
순위선택

▶

5단계  
서약서 작성

▶

6단계  
배점표 작성

▶

7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한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원 국민임대주택 2,029호

## 2 임대대상

단지	공급 형태(㎡)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에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1	국립	33	33.83	16.2860	2.0029	17.4222	69.5411	408	342	66	103-105,110-114	백식/복도식/지역난방	2016.03
		39	39.56	19.0444	2.3422	20.3732	81.3198	366	306	60	101,102,106,107,109,112		
		46A	46.63	22.4480	2.7608	24.0142	95.8530	96	76	20	108,110,111,113,114		
		46B	46.95	22.6020	2.7798	24.1790	96.5108	44	37	7	110,111,113,114		
		51A	51.96	25.0139	3.0764	26.7591	106.8094	146	119	27	103-107		
51B	51.96	25.0139	3.0764	26.7591	106.8094	45	37	8	103-105				
2	국립	33	33.83	16.3376	2.4359	16.9312	69.5347	174	144	30	201,202,205	백식/복도식/지역난방	2016.03
		39	39.56	19.1048	2.8485	19.7990	81.3123	88	71	17	203,204		
		46A	46.63	22.5191	3.3576	23.3374	96.8441	138	113	25	201-205		
		46B	46.95	22.6736	3.3807	23.4975	96.5018	22	20	2	203,204		
		46C	46.63	22.5191	3.3576	23.3374	96.8441	30	26	4	201,202		
5	국립	36	36.77	20.4588	2.0538	13.2854	72.5680	272	228	44	501,506,510	백식/복도식/지역난방	2016.06
		46	46.78	26.0284	2.6129	16.9022	92.3235	200	170	30	506,510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신청접수는 단지별, 공급형태로 각각 구분하여 접수(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하며, 공급형태 내 타입(A,B,C) 구분없이 일괄 접수하여 컴퓨터 추천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통호배정합니다.)  
※ 5단지는 국민임대(472세대)와 10년 공공임대(575세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10년 공공임대는 기 공급하였고, 금회에는 국민임대만 공급합니다

## 3 임대조건

단지	공급 형태(㎡)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원)	전환 임대조건(원) [예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계약시)					
1	33	10,481,000	2,090,000	8,391,000	188,000	18,000,000	28,481,000	98,000
	39	17,684,000	3,530,000	14,154,000	229,000	22,000,000	39,684,000	119,000
	46A,B	24,806,000	4,960,000	19,846,000	284,000	28,000,000	52,806,000	144,000
	51A,B	28,004,000	5,600,000	22,404,000	308,000	30,000,000	58,004,000	158,000
	33	10,575,000	2,110,000	8,465,000	189,000	18,000,000	28,575,000	99,000
2	39	17,829,000	3,560,000	14,269,000	229,000	22,000,000	39,829,000	119,000
	46A,B,C	24,972,000	4,990,000	19,982,000	285,000	28,000,000	52,972,000	145,000
5	36	10,433,000	2,080,000	8,353,000	217,000	21,000,000	31,433,000	112,000
	46	22,682,000	4,530,000	18,152,000	282,000	28,000,000	50,682,000	142,000

※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로 차등이 없으며, 기본 임대조건에 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전환이율(현재 연 6% 적용)에 따라 월임대료를 차감하여 드립니다.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행별 전환보증금 한도금액은 위의 전환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시(전금납부 후)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신청,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소득	3인이하가구	3,314,220원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신청함 (임신중인 경우 대야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657,250원이하	
	5인인가구	3,892,010원이하	
자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면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 우선공급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정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고소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층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자제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여부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 소득·자산 선정방법

구분	선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b>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선정함</b>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직기초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을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관부예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주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우선공급						
전용 50㎡ 미만	월평균소득 50%이하자	1순위	2015.05.26(화) 16:00이후	2015.08.13 16:00이후	2015.08.26(수) ~ 2015.08.28(금) (10:00-17:00)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2순위				
		3순위				
전용 50㎡ 이상	월평균소득 50%초과~70%이하자	1순위	[서류제출기간 2015.06.02(화) ~ 2015.06.03(수) (10:00-17:00)]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ARS (1661-7700)		
		2순위				
		3순위				

##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한 주택·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신청(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6 입주자 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지	구분	세대별	우선공급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1	1	국립	40	12	8	20	4	4	4	8	12	8	40	40	12	8	40	40	12	8	122																			
																						39	60	306	36	11	7	18	3	3	3	7	11	7	36	36	11	7	110	
																						46A	20	76	9	2	2	4	1	1	1	2	2	2	2	9	9	2	2	28
																						46B	7	37	4	1	1	2	1	1	1	1	1	1	4	4	1	1	13	
																						51A	27	119	14	4	3	7	1	1	1	3	4	3	14	14	4	3	43	
51B	8	37	4	1	1	2	1	1	1	1	1	1	4	4	1	1	13																							
2	2	국립	40	12	8	20	4	4	4	8	12	8	40	40	12	8	40	40	12	8	122																			
																						39	17	71	8	2	2	4	1	1	1	2	2	2	8	8	2	2	26	
																						46A	25	113	13	4	3	6	1	1	1	3	4	3	13	13	4	3	41	
																						46B	2	20	2	1	1	1	0	0	0	1	1	1	2	2	1	1	6	
																						46C	4	26	3	1	1	1	0	0	0	1	1	1	3	3	1	1	9	
5	5	국립	40	12	8	20	4	4	4	8	12	8	40	40	12	8	40	40	12	8	122																			
36	44	228	27	8	5	13	3	3	3	5	8	5	27	27	8	5	81																							
46	30	170	20	6	4	10	2	2	2	4	6	4	20	20	6	4	60																							

## ■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면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면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367,300	3,314,220
전용면적 50㎡미만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구, 금정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b>청약순위 확인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합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당해지역 (양산시)거주자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당해지역 (양산시)거주자	

# 양산신도시 LH 1·2·5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제32조제4항)	사업주택,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외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b>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b>, 부양여부는 <b>공급 신청자의</b>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한)</li> <li>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li> <li>3 「재대군인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재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li> <li>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li> <li>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li> <li>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li> <li>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li> <li>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li> <li>10 「아동복지법」제3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li> <li>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li> <li>12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제9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li> <li>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거주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사·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15 「군사정착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li> <li>「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모로</li> </ul> </li> </ol>
3차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b>우주택세대구성원</b>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인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청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적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b>우주택세대구성원</b> *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적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밀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행정자치부장관</b>이 비밀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b>우주택세대구성원</b></li> <li>2 비밀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b>우주택세대구성원</b></li> </ol>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b>혼인기간이 5년</b> 이내이고, ② <b>3기간에 임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에서 자녀 「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b> 이 있는 <b>우주택세대구성원</b> 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b>*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회시 납입할 줄 의의 납입한 자만 신청이 가능</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li> <li>2 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li> </ol> <p>*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p>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임)사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시 임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위임신청·불임낙태·임종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li> <li>-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자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자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li> <li>- 임양부부 임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li> </ul>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전용면적50㎡이상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
	전용면적50㎡이상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임)사의 거주자 → 순위 →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전용면적50㎡이상	순위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임)사의 거주자 →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점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재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 ■ 배점 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b>양산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b>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차녀이상	2차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b>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b>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용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 계층(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li> <li>※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사·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ul>
* 중대대상은 하나만 인정	
⑩ 사회취약 계층(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li> <li>·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b>자(계약자에 한함)</b>중 청약저축가입자</li> </ul>
⑪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선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경신계약은 제외	

\* ⑤, ⑥, ⑩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며,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우주택세대구성원</li> <li>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li> <li>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li> <li>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li> </ol>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 태이는 우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의 태아를 말합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60세 미만 성년의 형제·자매의 태아는 제외됩니다.

## 7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우주택세대구성원 전원</li> <li>· 만14세 미만의 우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li>·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li> <li>※ (주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1통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b></li> <li>· <b>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의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받아 제출 요망</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양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li> <li>·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li> </ul>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1통
국민주택 공공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li> <li>·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점)확인서는 온라인(www.ap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li> <li>※ <b>청약순위를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청약률)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li> <li>· 단지별 주택관리번호 : LH 1단지(2015000379), LH 2단지(2015000381), LH 5단지(2015000382)</li> <li>·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li> </ul>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임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인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신청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재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우선 공급 대상자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b>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b> - 일용근로자 → <b>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b>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b>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b>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b>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b> - 일용근로자 → <b>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b>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b>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b>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 공급 대상자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b>신청자</b> 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재·친인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인소(임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서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서	접수주소
	⑭ 아동위탁자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⑱ 남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남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⑳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모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㉒-③-⑤ <b>공급신청자</b>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㉒-4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㉒-5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㉒-6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해당 직장	
㉒-7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용된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취업기록부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㉒-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주민센터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참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처/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명서류	관련기관	
㉒-9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금(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활근로자 증명서 (차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신청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㉒-10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㉒-11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년 사본	-	

